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67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약사 · 한약사의 복수 약국 개설 · 운영 금지	3

I. 개요

1.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67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3. 20.
- (3) 회 부 일 : 2026. 3.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약국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함.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즉 형식상 각 약국이 약사 명의로 개설되고 그 약사가 일정 정도

운영에 관여한 이상, 이를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 개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임.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약국을 하나 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열고, 자신이 두 약국을 모두 지배·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국 이중개설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중개설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의료법」 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편법적 자본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약사·한약사의 복수 약국 개설·운영 금지

가. 개정안의 내용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u>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 <u>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u> ②·③ (현행과 같음)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1조제1항¹⁾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3항²⁾은 약사 및 한약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약사·한약사(이하 ‘약사’)는 자기 명의로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음.

1)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2) 「약사법」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의사로 하여금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³⁾과 달리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의 예와 마찬가지로 「약사법」에서도 복수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려는 것으로,

약국의 직접 운영 원칙을 분명히 하고 비약사 자본의 간접적 시장 진입과 네트워크형 약국의 확산을 차단하며, 궁극적으로 약국의 공공성과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3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의결 후 5월 26일 공포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입법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제21조 개정 사항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u>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u>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 ----- <u>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3)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중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문 의 처
02)6788-5504